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6월 26일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3. 개정이유

- 도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 재 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도 금고 약정기간을 확대하고,
- 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자부예규)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 금고를 지정·운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회계 및 금고관리 법령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관련 인용조항을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변경
-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(안 제4조)
 -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1회 한해 수의계약 규정 삭제

-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(안 제4조)
-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(안 제5조)
- 금고운용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포함(안 제11조)
-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 지정 조문화(안 제13조)
 - 사업비 총액, 세입예산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

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도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 재 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도 금고 약정기간을 확대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 금고를 지정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주요 내용은 금고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고, 회계 및 금고관리 법령을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변경하고,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며,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,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, 금고운용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포함시키고,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의 공개 범위를 지정하는 것 등입니다.

금번 개정조례안 중

첫째,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, 현재 17개 시도 중 금고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 곳은

충북을 포함하여 7개 시도이며, 4년으로 한 곳은 10개 시도입니다. 또한 금년말 금고 재계약을 앞둔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장기계약에 따른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용이 가능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할 경우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둘째,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은 도금고 계약시의 합의한 협력사업비 출연을 보다 공개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셋째, 기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.

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영, 협력사업비의 공개를 통한 출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적합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